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8 선고 2022가단1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8.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8. 5. 23. 접수 제406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황경환

별지